

대구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1386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박한결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3. 6. 7.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967,746원 및 그 중 18,967,631원에 대하여 2022. 8. 10.부터 2023. 1. 28.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6. 21. 체결된 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7. 접수 제463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2. 6. 21. 피고 B와 사이에 이혼에 따른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 B는 피고 A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22드단102354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그 소송에서 대구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2022. 4. 29. 이자연체로 인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고, 그 후 2022. 8. 10. 피고 A를 대위하여 C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피고 B는 위와 같은 원고의 사전 및 사후 구상금채권 발생 이전인 2022. 2. 28. 피고 A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③ D은행의 부동산 시세자료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85,000,000원 정도인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전세금 38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금 38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고 B가 위 전세금반환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피고 A에게 배상하기로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A이 2023. 3.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A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 B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 현재까지도 피고 A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들이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고, 피고 B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 A의 유책행위로 피고들이 이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 소유의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호 아파트는 피고들이 혼인하기 약 8년 이전에 피고 B가 언니 G와 각 1/2 지분씩 취득한 재산으로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욱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아파트 제18층 J호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아파트

[도로명주소] 대구 달서구 K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L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34.257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달서구 H 대 4392.4㎡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392.4분의 21.5414

- 이 상 -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피고 B는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피고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익자입니다.

2. 구상금 청구

가. 피고 A과 주식회사 C은행 사이의 각 대출계약에 대한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피고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합니다)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A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2 각 신용보증약정서, 갑 제2호증의 1, 2 각 신용보증서 각 참조).

- 아 래 -

	제1약정	제2약정
대출기관	C은행	C은행
대출과목	<기운>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	<기운>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
보증번호	M	N
보증금액	9,500,000원	9,500,000원
보증일자	2020. 5. 28.	2020. 12. 21.
보증기한	2025. 5. 28.	2025. 12. 22.

나.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위 각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소정물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2 각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다. 손해금율의 변동

한편,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입니다(갑 제3호증 손해금을 변경통보 참조).

라. 원고의 대위변제 등으로 인한 구상범위

1)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사업운영 중 위 각 약정과 관련하여 2022. 4. 29.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갑 제4호증 신용보증사고통지서 참조),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22. 8. 10. C은행에 19,495,151원(= 제1약정 대위변제금 9,874,306원 + 제2약정 대위변제금 9,620,845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2) 일부회수와 확정손해금의 발생

원고는 위 제1약정과 관련하여, 대위변제 후 527,520원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고, 그때부터 위 제1약정의 대위변제잔금은 9,346,786원(= 대위변제금 9,874,306원 - 회수금 527,520원)이 되었으며(갑 제6호증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참조), 위 회수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따라 확정손해금 115원이 발생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확정손해금계산근기 참조).

3) 구상범위

따라서 원고가 피고 A에게 청구할 구상금 채권 총액은 18,967,746원(= 제1약정 대

위변제잔금 9,346,786원 + 제1약정 확정손해금 115원 + 제2약정 대위변제금 9,620,845원)입니다.

마. 소 결

그러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18,967,746원 및 그 중 제1약정 대위변제잔금, 제2약정 대위변제금 합계 18,967,63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시기(대위변제일 2022. 8. 10.)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계약(2022. 6. 21.)이 체결된 이후이지만, 피고 A은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기 약 1개월 전인 2022. 4. 29.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신용보증사고통지서, 갑 제8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참조).

그렇다면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계약 체결 당시 이미 구상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1)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21. 피고 B와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7. 접수 제463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8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2) 피고 A은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만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는바,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의 구상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재산분할계약을 체결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 바,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2. 6. 21.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 2)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는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7. 접수 제463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이에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